제5편 산학협력 5-1-16

HiT CARE-MATE센터 운영규정

2023. 09. 18. 최초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HiT CARE-MATE 전 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HiT CARE-MATE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 및 업무) 본 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대전형 통합 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2.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교육
- 3. 센터 실습실 및 실습 물품관리 운영
- 4. 기타 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

제2장 조직

제4조(조직)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별도의 팀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센터장 및 팀원) ①본 센터는 HiT CARE-MATE센터장(이하 "센터장"이라 한다)을 두며, 센터장은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.

-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.
- ③팀원은 센터의 사업 관련 교수 및 관련 직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제7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.
- 2.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센터장과 대학의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3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 가으로 한다.
- 4.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- 1.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 자문에 관한 사항
- 3.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

제5편 산학협력 5-1-16

- 4. 센터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의 관한 사항
- 5. 센터의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
- 6. 센터의 제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
- 제9조(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4장 재정

제10조(재정)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- 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
- 2. 본 대학 지원금
- 3. 산학협력단 운영비
- 4. 기타 지원금
- ②재정의 편성과 결산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③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5장 보칙

제11조(규정 외 사항 처리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재정지원의 상위기 관, 관련법령 및 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